

• 소통의 연수 • 통합의 연수 • 안전한 연수



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348호 2022. 12. 12.(월)

【공 고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786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) 1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787호(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) 9

【고 시】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80호(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) 10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-1786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2월 9일

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구청사 주차장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, 정기차량 무료운영에 따른 공무원 등 이용차량 감면 조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제4조(주차요금 징수 등) 및 제6조(주차요금) 개정
- 제6조제2항 기존 사항 일부 삭제
- 제4조의2(정기차량) 신설

3. 의견제출

이 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(참조:총무과장,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(전화 : 749-7184, FAX : 749-715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(붙임 1)

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2부제 참여 차량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기차량) ① 상시 출입하는 구 본청(의회 포함)공무원, 공익근무요원, 구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(이하 “공무원 등”이라 한다)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정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.

②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,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정기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정기차량의 1일 주차요금은 1,400원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상시 출입하는 공무원 등이 운전하는 차량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, 제5조제2항”을 “제4조의2제1항”으로, “5부제·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1일 1,000원”을 “2부제 제외 차량 요금은 제5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5부제·요일제”를 “2부제”로, “해당”을 “주차장 사용금지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타인”을 “다른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 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주차요금 징수 등)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(이하 “차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징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4조(주차요금 징수 등)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2부제 참여 차량</u> <u>제4조의2(정기차량) ① 상시 출입하는 구 본청(의회 포함)공무원, 공익근무요원, 구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(이하 “공무원 등”이라 한다)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정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.</u> <u>②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,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정기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

제5조(주차요금) ① (생략)

② 상시 출입하는 구 본청(의회 포함)공무원, 공익근무요원, 구 본청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(이하 “공무원 등” 이라 한다)이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정기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, 정기차량의 1일 주차요금은 1,400원으로 한다. 다만,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6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(생략)

② 상시 출입하는 공무원 등이 운전하는 차량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, 제5조제2항에 따라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5부제·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은 1일 1,000원으로 하되, 조례 제5조제1호, 제2호, 제7호,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700원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차량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주차요금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정기차량의 1일 주차요금은 1,400원으로 한다.

제6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4조의2제1항-----

----- 2부
제 제외 차량 요금은 제5조제2항--

-----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5부제·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이 해당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한다.

제7조(주차요금의 징수방법) ① (생략)

② 정기차량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, 관리자는 신청인의 차량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정기주차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징수요금의 관리) ①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, 다음 업무개시일 즉시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」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1조(손해배상 등의 책임) ① 이용자가 주차장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

③ -----
----- 2부제-----
----- 주차장 사용금지 -----
-----.

제7조(주차요금의 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징수요금의 관리) ① -----

-----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손해배상 등의 책임) ① -----

----- 다른 사람-----

우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
복구 또는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
다.

② (생 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시행하는 「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(3차), <22이지0592>」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12일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1. 사 업 명: 사모지근린공원 조성사업(3차)
2. 사 업 위 치: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279번지 일원
3. 사업 시행자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4. 공 고 기 간: 2022. 12. 12. ~ 12. 27. (15일간)
5.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
 -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
(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, 3층 공원녹지과 / ☎032-749-8722)
 -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부 인천사업소
(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, 백양빌딩 405호 / ☎032-569-7566~8)
6. 공시송달 대상

수용토지의 표시	성명	송달주소(최종 확인지)	비고
연수구 청학동 279번지 일원	이○구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산로46번길 ○-○○(마전동)	공시송달 대상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(032-749-8722) 및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부 인천사업소(032-569-7566~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12.12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18.04.13	송도6,8공구 사업지구 명칭을 반영	송도동 308-2	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4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▶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12.12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○ 신규 부여된 도로명 주소

도로명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관련지번	신규도로명주소
2019.03.15	해돋이로 시작점에서 1710m 떨어진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송도동 22-6 외 1	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171번길 9-4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공간정보과 도로명담당자(☎749-7602)에 문의
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▶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(도로명주소의 사용 등)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▶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▶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(도로명의 변경 절차) 및 제26조(건물번호의 변경·폐지 절차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▶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(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)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